

2008년 3월 시행 제1차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

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 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③

통합 형사소송법 p 627, 628 참조 (적중)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있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694~697 참조 (적중)

정답 ② ㄷ,항목만이 옳지 않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3조에 해당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0세 미만의 자)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신체장애자 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x)
5.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6. 피고인이 구속된 때

【제33조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청구국선)

【제33조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000.06.30일 개정)

3.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단순 추완에 속하나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속한다.
- ② 추완이란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변호인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동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동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782~785 참조 (적중)

정답 ④

- ①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단순 추완에 속한다.
- ② 추완이란 무효의 처유의 문제이지 불성립을 사후에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될 수 없다.

4. 다음 중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인 형법상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약취유인죄	㉡ 체포감금죄
㉢ 도주와 범인은닉죄	㉣ 상해죄
㉤ 미성년자간음죄	㉥ 존속협박죄
㉦ 통화에 관한죄	㉧ 공갈죄

- ① 3개
- ② 4개

③ 5개

④ 6개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00 참조 (적중)

정답 ③ ㄱ, ㄴ, ㄷ, ㄹ, ㅁ 이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대상범죄이나 존속협박죄는 대상범죄가 아니다. 또한 미성년자간음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는 대상범죄이나 미성년자간음죄(=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는 대상범죄가 아니다.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③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요구되는 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고소권을 갖는다.
- ④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만을 따로 기소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61, 75, 77 참조 (적중)

정답 ③

6.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한다.
- ㉢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절차에 대한 재판형식은 ‘명령’이다.
- ㉣ 공소제기전의 피의자 체포구인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78, 188, 191참조 (적중)

정답 ④ 모두가 옳지 않다.

피고인 구속시 진술거부권은 고지의 내용이 아니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독립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사항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하는 재판의 형식인 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고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형소법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7. 피고인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석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는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③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 235, 236, 238 참조 (적중)

정답 ①

보석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8.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 ④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에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105, 270, 273, 274 참조 (적중)

정답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9.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살인죄 폭행치사죄
- ㉡ 명예훼손죄 모욕죄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특수강도죄
- ㉣ 특수강도죄 특수공갈죄
- ㉤ 특수절도죄 장물운반죄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429, 430 박스 참조 (적중)

정답 ② ㉢만이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②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

정하고 지정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341~346 참조 (적중)

정답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11. 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판기일에 소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출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이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503 ㉔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및, 512 참조 (적중)

정답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 피고인은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568, 566, 564 참조 (적중)

정답 ② =만이 옳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 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7일내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 ②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 ④ 감정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848~849, 875~882참조 (적중)

정답 ③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313조 【진술서등】

-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14.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①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할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 경에 뇌물 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문서인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961~963참조, 및 2007년 10월 종로 문제풀이집 21번 참조 (적중)
정답 ③ ㉠,㉡만이 옳다.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 ③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 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의 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의 하였다고 인정되 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447, 448, 453 박스안 라. 판례, 455 박스판례 참조 (적중)

정답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16.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 ②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 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 ④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 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992 ㉠의 ㉠ 참조, 989, 990, (적중)

정답 ①

구성요건을 해당성을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으로서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④ 제1심판결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항소심에서 정기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선고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066 ④ 번 내용, 1068, 1069 참조 (적중)

정답 ①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유죄판결과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③ 항소심에서 제1심을 파기한 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은 효력이 없어진 것이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심대상이 아니다.
- ④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 증언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121참조 (적중)

정답 ④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 증언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는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결 1997. 1. 16, 95도38)

19.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②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직접적인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155 (2)의 ① ㉠ 참조, 1156,1157 참조 (적중)

정답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 미결구금일수에 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②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만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병합심리된 원판결의 일부만이 파기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
-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해설

통합 형사소송법 p1182,1183 참조 (적중)

정답 ②

상소기각결정시의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